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신규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 <u>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8조에</u>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8조에</u>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관세법」 제233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u>한국원산지정보원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u>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법 제233조의2(한국원산지정보원의 설립) 개정 사항 반영
<p><신 설></p>	<p>제3조의2(인증 지원) ① 「관세법」 제233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u>한국원산지정보원은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등의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u></p> <p>1. <u>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심사(유효기간 연장심사를 포함한다) 예비조사</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원산지정보원이 수행하는 인증 지원 내용 및 절차 규정 신설

	<p align="center"><u>업무</u></p> <p>2. <u>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 예비조사 업무</u></p> <p>② <u>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인증요건 심사, 제13조에 따른 인증유효기간 연장심사 및 제16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 결과 확인의 절차는 제1항에서 정하는 절차를 포함한다.</u></p> <p>③ <u>한국원산지정보원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사 결과를 업무 담당부서에 서면으로 보고하거나 결과를 직접 설명하는 방식으로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원산지정보원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등의 지원과 관련된 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u></p> <p>④ <u>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u></p>	
--	---	--

<p>제5조(인증신청 및 관할세관)</p> <p>① (생략)</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증신청자는 생산자 또는 생산공장 주소지가 다른 세관의 관할지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재지의 관할세관장에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신청자는 <u>별지 제4호서식의 관할세관 변경신청(승인)서</u>로 인증신청자의 관할세관장에게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관할세관 변경신청을 접수한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u>신청인에게 관할세관 변경승인서를 교부하고</u> 변경된 관할세관장에게 신청인의 인증심사 자료를 지체 없이 인계해야 한다.</p>	<p>제5조(인증신청 및 관할세관)</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u>별지 제4호서식의 관할세관 변경신청서</u>로 ----- -----.</p> <p>③ ----- ----- <u>이를 승인하고</u> ----- -----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지서식 수정사항 반영 • 별지서식 수정사항 반영
<p>제7조의2(인증신청 취하) ① 인증신청자가 인증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기관에 승인 전까지 별지 제1호</p>	<p>제7조의2(인증신청 취하) ① ----- ----- -----</p>	

<p>의2서식의 <u>인증신청 취하신청(승인)서</u>를 제출해야 한다.</p> <p>② (생략)</p> <p>제12조(현지확인)</p> <p>①~③ (생략)</p> <p>④ 제3항에 따라 현지확인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현지확인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현지확인을 연기하려는 기간과 현지확인 연기사유를 기재한 <u>별지 제3호의2서식의 현지확인 연기신청(승인)서</u>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제12조의3(인증서 발급 및 재발급)</p> <p>①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인증요건 심사를 한 세관장은 인증신청자가 각 인증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u>20일</u> 이내에 규칙 <u>별지 제26호서식</u> 또는 <u>별지 제30호서식의 인증서</u></p>	<p>----- <u>인증신청 취하신청서</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2조(현지확인)</p> <p>①~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 <u>현지확인 연기신청서</u>----- -----.</p> <p>제12조(현지확인)</p> <p>① ----- ----- ----- ----- ----- 30일 ----- <u>별지 제26호서식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지서식 수정사항 반영 • 별지서식 수정사항 반영 • FTA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및 서식명 추가
---	--	--

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때 인증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영문본 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13조(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및 심사)

① (생략)

②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여러 건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증유효기간의 만료일이 1년 이내인 인증건들에 대해서는 인증유효기간 연장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장 먼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 신청해야 한다.

③~⑤ (생략)

증서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및 심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여러 품목의 인증건들에 대해서 인증유효기간 연장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장 먼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 1년 전부터 만료 30일 전까지 연장 신청해야 하며, 일괄 연장 신청한 품목들의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은 모두 가장 먼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품목의 만료일로 한다.

③~⑤ (현행과 같음)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유효기간 일괄연장 대상건 확대 및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통일

제14조(인증사항 변경신고)

①~② (생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1. ~ 3. (생략)

제15조(인증 효력상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기존 인증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1. 원산지인증수출자가 폐업한 경우
2.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신규 인증 받은 경우
3. 여러 건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14조(인증사항 변경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다만, 개인 사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현행과 같음)

제15조(인증 효력상실) ① -----

1. -----
2. -----
3. -----

• 개인사업자의 포괄양수도 법인전환 시 인증승계 명확화

<p>가 한 건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통합하여 신규 인증 받은 경우</p> <p><신 설></p> <p>② (생 략)</p> <p>제16조(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p> <p>①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영 제7조 각 호에 따른 인증요건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다음 각 호의 기간에 <u>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작성하여 자율점검을 실시한 달의 말일까지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u></p> <p>1. ~ 2. (생 략)</p> <p>②~③ (생 략)</p> <p>제17조(원산지인증수출자 사후관리)</p>	<p>-----</p> <p>-----</p> <p>4. <u>원산지인증수출자가 기존 인증사항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u></p> <p>② (현행과 같음)</p> <p>① -----</p> <p>----- <u>별지 제6호서식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표에 따라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 결과통보서에 작성하여 자율점검을 실시한 달의 말일까지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u></p> <p>1. ~ 2.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7조(원산지인증수출자 사후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 신청에 의한 인증 취소 근거 마련 • 서식명 추가
---	--	---

<p>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선별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후관리대상업체를 선정하고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지확인을 통하여 인증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u>확인할 수 있다.</u></p> <p>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현지확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2조의 현지확인 절차를 준용한다.</p> <p>③ <u>현지확인을 실시한 세관공무원은 별지 제7호서식으로 현지확인 결과를 담당과장에게 보고하고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u></p>	<p>① -----</p> <p>-----</p> <p>----- <u>확인(이하 “서면확인 또는 현지확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u></p> <p>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u>서류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제출 기간을 10일 이상 부여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서류제출 요구서로 하며 현지확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2조의 현지확인 절차를 준용한다.</u></p> <p>③ <u>서면확인 또는 현지확인을 실시한 세관공무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서면(현지)확인결과 보고서로 확인 결과를 담당과장에게 보고하고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세관장이 서면확인 또는 현지확인을 완료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의 서면(현지)확인 결과통보서로 사후</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조사기본법」에 맞게 사후관리 업무절차 정비 (서류제출 서면 요청 및 서면/현지확인 결과를 업체에 통보하는 절차 추가)
---	---	--

관리대상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시정요구서로 결과 통보에 갈음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원산지인증수출자 관리담당 부서장은 인증 심사 및 취소 사유 파악을 위해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조회해야 한다.

1. (생략)

2.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보관의무 위반사실 여부

3. (생략)

제19조(인증취소 및 청문) ① 세관장은 규칙 제17조제12항 및 제18조제7항에 따른 청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 예정일 10일 전까지 청문 예정일을 지정

④ (생략)

⑤ -----

-----.

1. (현행과 같음)

2. -----
----- 영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

3. (현행과 같음)

제19조(인증취소 및 청문) ① -----

• 생산자의 서류보관의무 위반사실 조회 추가

하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의견 제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문통지를 받은 대상자 또는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지정된 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

별지 제9호서식의 청문통지서로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세관장은 청문통지를 받은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
-----. 다만, 청문통지를 받은 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받은 일자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청문일자 조정 요청서로 청문일자를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재검토기한) -----
----- 2024

• 신설한 별지서식 반영 및 당사자의 의견진술 포기의사에 따른 청문생략 근거 마련

• 청문대상자의 청문일자 조정 요청 절차 신설

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
 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 설>

부칙 <제2024-16호, 2024. 4. 1.>
 이 고시는 2024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인증신청 취하신청서(승인)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인증신청 취하신청서(승인)서			
인증신청 취하신청서(승인)서			
승인번호		즉 시	
1. 신고제관	2. 신고과		
(상호)	(성명)		
3.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4. 인증신청번호			
5. 신청일자			
6. 인증 신청 사업자번호 (법인단위 신청건은 해당 법인번호)			
7. 인증 신청 사업자 상호(대표자)			
8. 취하사유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신청 취하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세 관 장 귀하			
..... 자 료 는 신			
승인번호			
위 취하신청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1호의2서식] 인증신청 취하신청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인증신청 취하신청서			
인증신청 취하신청서			
1. 신고제관	2. 신고과	즉 시	
(상호)	(성명)		
3.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4. 인증신청번호			
5. 신청일자			
6. 인증 신청 사업자번호 (법인단위 신청건은 해당 법인번호)			
7. 인증 신청 사업자 상호(대표자)			
8. 취하사유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신청 취하를 신청합니다.			
신청자 :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세 관 장 귀하			
..... 자 료 는 신			
.....			

• 별지서식 수정(간소화)

[별지 제3호의2서식] 현지확인 연기신청 (승인)서

[별지 제3호의2서식] 현지확인 연기신청서

현지확인 연기신청(승인)서

승인번호	상호		전화번호/팩스(FAX)
신청인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e-mail)	
	주소		
현지확인 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까지(일간)		
연기(희망)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까지(일간)		
연기신청 이유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현지확인 연기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세 관 장 귀하

자 르 는 선

승인번호	
------	--

위 현지확인 연기신청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세 관 장 (직인)

210mm×297mm(바탕지 크기) 80g/㎡(지정종이)

[별지 제3호의2서식] 현지확인 연기신청서

[별지 제3호의2서식] 현지확인 연기신청서

현지확인 연기신청서

신청인	상호	전화번호/팩스(FAX)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e-mail)
주소		
현지확인 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까지(일간)	
연기(희망)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까지(일간)	
연기신청 이유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제 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현지확인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세 관 장 귀하

210mm×297mm(바탕지 크기) 80g/㎡(지정종이)

• 별지서식 수정(간소화)

[별지 제4호서식] 관할세관 변경신청(승인)서

[별지 제4호서식] 관할세관 변경신청(승인)서

원산지인증수출자 관할세관 변경신청(승인)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 일
신청인	상 호	사업자 번호	
	주 소	대표자 성명	
	전 화 번 호	팩 스 (F A X)	
	전 자 우 편 (e - m a i l)	인 증 번 호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관 할 세 관			
변 경 사 유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라 관할세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세 관 장 귀하

자 르 는 선

승인번호	
------	--

위와 같이 변경신청사항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세 관 장 직인

○○ ○ 귀하

210mm×297mm(바탕지 크기) 80g/㎡(지정종이)

[별지 제4호서식] 관할세관 변경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관할세관 변경신청서

원산지인증수출자 관할세관 변경신청서

신청인	상 호	사업자 번호
	주 소	대표자 성명
	전 화 번 호	팩 스 (F A X)
	전 자 우 편 (e - m a i l)	인 증 번 호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관 할 세 관		
변 경 사 유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라 관할세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세 관 장 귀하

210mm×297mm(바탕지 크기) 80g/㎡(지정종이)

• 별지서식 수정(간소화)

[별지 제7호서식]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보고자	주 무	과 장	과장 직서사함(직리외전)
-----	-----	-----	---------------

현지확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가. 확인 결과

인증번호				차수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인증종류 (필요시 별지 기재)	HS 6단위	품명	형질	원산지기준	
원 산 지 전 달 자	성명	소속	직책	전화번호	전자우편 (e-mail)
인증요건			확인결과		위반내역
			이상없음	이상있음	
원산지증명능력					
원산지증명시스템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상 비치 및 관리					
원산지관리권당자의 업무수행 여부 (원산지관리권담당자 업무 대장 등)					
협력업체 관리 여부 (협력업체 교육 관리 등)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원산 기조사 거부 사실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 보관의무 위반 사실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원산지증명서의 속임수 또는 부정발급					

나. 첨부서류 :

[별지 제7호서식] 서면(현지)확인결과 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 서면(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서면(현지)확인결과 보고서

보고자	주 무	과 장	과장 직서사함(직리외전)
-----	-----	-----	---------------

(서면, 현지) 확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가. 확인 결과

인증번호				차수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인증종류 (필요시 별지 기재)	HS 6단위	품명	형질	원산지기준	
원 산 지 전 달 자	성명	소속	직책	전화번호	전자우편 (e-mail)
인증요건			확인결과		위반내역
			이상없음	이상있음	
원산지증명능력					
원산지증명시스템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상 비치 및 관리					
원산지관리권당자의 업무수행 여부 (원산지관리권담당자 업무 대장 등)					
협력업체 관리 여부 (협력업체 교육 관리 등)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원산 기조사 거부 사실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 보관의무 위반 사실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원산지증명서의 속임수 또는 부정발급					

나. 첨부서류 :

- 별지서식 수정 (서식명 및 양식 변경)

<신 설>

[별지 제9호서식] 청문통지서

청 문 통 지 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2항 및 제18조제7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취소 관건으로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에 참석 또는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당사자	성 명 (직위):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업체 주소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취소 (인증유형 : 업체별 / 품목별, 인증번호 :)
3. 처분의 법적근거	관련 규정
	해당 여부(√)
4. 청문 실시	일 시
	장 소
	담당부서
	담당자(전화번호)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 청문출석 대신 의견서 서면제출이 가능합니다.
※ 의견진술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청무원 '의견진술 포기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절당한 서류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9호서식] 청문통지서

[별지 제9호서식] 청문통지서

청 문 통 지 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2항 및 제18조제7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취소 관건으로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에 참석 또는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당사자	성 명 (직위):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업체 주소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취소 (인증유형 : 업체별 / 품목별, 인증번호 :)
3. 처분의 법적근거	관련 규정
	해당 여부(√)
4. 청문 실시	일 시
	장 소
	담당부서
	담당자(전화번호)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 청문출석 대신 의견서 서면제출이 가능합니다.
※ 의견진술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청무원 '의견진술 포기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절당한 서류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서식 신설(의견진술 포기서 포함)

의견진술 포기서

인적사항	성명 (직위):	_____
	상호:	_____
	사업자등록번호:	_____
	업체 주소:	_____

본인은 귀 세관의 청문 통지에 대한 출석 및 의견서 제출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210mm x 297mm (복합기 302mm x 210mm 사용)

<신 설>

[별지 제10호서식] 청문일자 조정요청서

• 서식 신설

[별지 제10호서식] 청문일자 조정요청서

청문일자 조정요청서

신청인	상호	전화번호/팩스(FAX)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e-mail)
	주소	
통보받은 청문일자	20 년 월 일	
희망하는 청문일자	20 년 월 일	
조정요청 사유	_____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 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일자 조정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〇〇 세 관 장 귀하

210mm x 297mm (복합기 302mm x 210mm 사용)

[별지 제11호서식] 서류제출 요구서

서류제출 요구서

대상구분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인증주출지번호	
인증 업체	상 호	사업자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팩스(FAX)
	주 소	
제 출 기 한		~ 20 년 월 일
제 출 할 서 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하오니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세 관 장 직인

※ 제출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세관에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때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자료제출에 대한 문의처 : 00세관 00과 담당자 000 (☎)

210mm x 297mm(제곱지 85g/㎡) 1면 1쪽(복합지)

통지서

[별지 제12호서식] 서면(현지)확인 결과통보서

서면(현지)확인 결과통보서

대상구분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인증주출지번호	
인증 업체	상 호	사업자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팩스(FAX)
	주 소	
구 분		서면 확인 [] 현지 확인 []
확인 결과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현지)확인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세 관 장 직인

※ 결과통지에 대한 문의처 : 00세관 00과 담당자 000 (☎)

210mm x 297mm(제곱지 85g/㎡) 1면 1쪽(복합지)